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7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석

변론 종결2023. 3. 9.

판결 선고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와 E 사이에 체결된 2020. 7. 12. 40,000,000원, 2020. 8. 14. 20,000,000원, 2020. 9. 29. 19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제1항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 사이에서, 피고 C와 E 사이에 2021. 3. 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147,605,4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D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기재 제2항 내지 제1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E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E에게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21. 11. 12. 접수 제82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2017. 9. 20.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9,000만 원에 대한 보증약정을(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2018. 3. 8. F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원에 대한 보증약정을(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고, E는 F의 위 각 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보증약정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위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22. 2.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보증약정에 대한 보증사고(원금 연체) 통지를, 2022. 2. 15. G은행으로부터 제2보증약정에 대한 보증사고(원리금연체) 통지를 받고, 2022. 3. 29. 제1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69,160,326원을, 제2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

281,998,61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F에 대한 위 각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E는 2020. 7. 12.경부터 2021. 11. 1.경까지 가족인 피고들에게 그 명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피고 A는 E의 배우자이자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는 E의 자녀이며, 피고 D는 E의 형제이다). E가 처분한 재산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000만 원	2020. 7. 12.	피고 A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
2,000만 원	2020. 8. 14.		
1억 9,000만원	2020. 9. 29.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2021. 3. 9.	피고 B피고 C	피고 B, C가 2021. 3. 15. 해당 부동산에 관한 2021. 3. 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21. 2. 10.	피고 D	2021. 2. 10.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별지 목록 2항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	2021. 11. 1.	피고 D	2021. 11. 12. E 명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1.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 및 E에 대하여 앞서 본 구상금 채권이 있는데, E가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재산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E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1, 2, 3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으로써 나머지 청구취지 각 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지급 또는 등기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먼저 E의 위 각 재산 처분행위 당시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 및 E와 원고가 제1, 2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보증약정은 '본인(F)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를 사전구상권 발생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제10호), F은 2020. 8. 31.경 부가가치세 43,295,390원을, 2020. 10. 24.경 부가가치세 18,054,200원을 각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1.경까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F의 국세 체납 빈도 및 액수 등에 더하여,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재산 처분행위의 시점이 2020. 7. 12.경부터 2021. 11. 1.경까지이고 위 국세 체납 기간이 2020. 8. 31.경부터 2022. 5. 31.경으로, 위 두 기간이 근접하거나 겹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각 재산 처분행위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내지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결국 원고가 제1, 2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69,160,326원을, G은행에 281,998,614원을 변제함으로써 F 및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각 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일응 구상금 채권 내지는

사전구상권을 각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F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기간을 연장해 준 이상 사전구상권의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원고의 보증기간 연장은 E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보증기간 연장 의사표시에 사전구상권 내지 이에 기초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포기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F의 국세 체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존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초래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E의 1.의 다.항 기재 각 재산 처분행위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E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핀다.

갑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0. 7.경 E가 아래와 같이 총 1,086,14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행	9,813,000	갑15호증
H은행	84,412,000	
G카드	8,362,000	
I카드	30,000,000	
G카드	9,660,000	
기업은행	12,000,000	갑11호증피고들의 2022. 6. 29.자 준비서면
원고	368,000,000	
G은행	30,000,000	
J캐피탈	173,900,000	
K보험	150,000,000	
피고 D	210,000,000	
합계	1,086,147,000	

갑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의 다.항 기재 각 재산 처분일 무렵 E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 아래 각 부동산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E의 그 적극재산의 가액 총 합계액이 아래와 같이 823,631,26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45,000,000	감정인 L의 감정 결과(2021. 3. 9.기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7,352,000	갑14호증(가격자문서 작성일은 2022. 3. 23.로 보이고 감정기준일은 알 수 없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7,746,20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62,946,00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5,531,400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3,600,000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020,667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3,131,33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20,720,000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2,250,000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1,253,333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7,882,000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14,140,000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21,058,333	
M아파트 N호	399,000,000	갑11호증의 1(2020. 7. 11. 매매당시 거래가액 : 등기부기재)
합계	823,631,266	

그런데 E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 처분행위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처분행위 시점 별로 그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액이 각각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7.경의 소극재산 총액 및 위 각 특정 시점의 각 적극재산 가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1) 그에 앞선 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재산 처분행위일인 2020. 7. 12., 2020. 8. 14., 2020. 9. 29. 각 시점에서의 E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아예 알 수가 없고, (2) 그 이후 각 재산 처분행위일인 2021. 3. 9., 2021. 2. 10., 2021. 11. 1. 각 시점에서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도 원고 주장의 소극재산액과 적극재산액의 각 기준 시점과의 격차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 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만일 원고 주장 소극재산 총액과 적극재산 총액 사이에 현격한 간극이 있어서 각각의 처분행위 시점 별로 무자력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소극재산 총액 자체가 과다하다면 모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소극재산 총액 약 10억 8,600여만 원과 적극재산 총액 약 8억 2,400여만 원간의 차액(각 평가 시점의 차이를 일응 무시한다 치고)은 약 2억 6,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각 처분행위 시점 별로 무자력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는 정도로 전 기간에 걸쳐 현저히 소극재산이 과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재산 처분행위 시점마다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 가액, 즉 각 시점 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처분행위 시점에 각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하는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갑 14호증은 원고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자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로서, 대상 부동산들의 가격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보더라도 갑 14호증에서 제시된 가액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갑 14호증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 전례가 없어 개략적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정확한 평가액은 정식감정을 요함" 내지는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아니한 개략적인 가액이므로 정식 평가 의뢰된 감정평가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달리 별지 목록 제2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E의 위 각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재산 처분행위의 각 사해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주장들은 각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수희

판사이슬아

판사서영우

별지